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816

발의연월일: 2025. 4. 15.

발 의 자: 강훈식·민병덕·김한규

김남근 • 강준현 • 김병기

김용만 • 이정문 • 박상혁

문진석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이 2024년 시행되어 가상자산을 매매, 교환하는 이용자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책이 마련되었으나 이용자 증가세, 변화하는 기술 환경 및 운영상 제기된 문제점 등에 따라 계속적인 개선이 요구됨.

우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거래소로 하여금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변경·폐지하려는 경우에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과 같이, 가상자산거래소 또한 관련 업무 규정 신고 및 공개를 의무화하여 투명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두 번째로, 가상자산거래소가 영업을 종료하거나 중단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해당 가상자산거래소가 보유한 이용자 자산을 반환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 등이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완이 요구됨.

마지막으로, 현행법은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시장의 이상거래에 대한 상시감시 및 대응 조치 등을 수행하 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필요한 전문성이 담보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 련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 가.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시장 이용약관 등에 대하여 신설·변경·폐지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신 고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 나.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시장의 운영 종료에 대한 업무지침을 홈페이지에 공개함.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시장 운영을 종료하려는 경우에는 종료 1개월 전에 종료 예정 사실을 금융위원회와 이용자에게 알리고, 금융위원회는 해당 가상자산시장이 보유한 이용자 자산 등에 대하여 이전 및 반환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8조의 신설).
- 다. 가상자산시장 이상거래 감시 등에 필요한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인력 확보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법률 제 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가상자산 이용약관 등의 신고) ①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이용약관과 그 밖에 업무·이용과 관련한 규정(이하 "이용약관등"이라 한다)을 신설·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신설·변경 또는 폐지 후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약관등의 신설·변경 또는 폐지 전에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이용약관등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의3(가상자산시장의 운영 종료 조치 등) ① 가상자산시장을 개설 ·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시장의 운영 종료에 따른 이 용자 안내 방안, 출금지원 및 회원정보의 보존과 파기 등에 대한 정 책을 담은 운영종료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 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② 가상자산시장의 운영을 종료하려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운영 종료 일부터 1개월 전에 운영 종료 예정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이용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 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가 보유한 이용자 소유 예치금과 가상자산 등을 금융위원회로 이전하여야 하고, 금융위원회는 이전받은 이용자 소유 예치금과 가상자산 등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있다.
-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가상자산시장 운영 종료 절차와 이전 및 반환 조치 등에 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의 가상자산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인력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연수 제도 수립 등 체계적인 인력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용약관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이용약관이나 그 밖에 업무·이용과 관련한 규정을 신설·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 <신 설></u>	제8조의2(가상자산 이용약관 등
	의 신고) ①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
	<u>자는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이</u>
	용약관과 그 밖에 업무ㆍ이용
	과 관련한 규정(이하 "이용약
	관등"이라 한다)을 신설·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신설
	<u>• 변경 또는 폐지 후 10일 이</u>
	내에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
	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약
	관등의 신설・변경 또는 폐지
	전에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
	<u>하여야 한다.</u>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이용
	약관등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
	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u><신 설></u>	제8조의3(가상자산시장의 운영
	종료 조치 등) ① 가상자산시
	<u>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u>

사업자는 가상자산시장의 운영 종료에 따른 이용자 안내 방안, 출금지원 및 회원정보의 보존 과 파기 등에 대한 정책을 담 은 운영종료 업무지침을 마련 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 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가상자산시장의 운영을 종료하려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운영 종료일부터 1개월 전에 운영 종료 예정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이용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지하여야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사업 자는 자기가 보유한 이용자 소 유 예치금과 가상자산 등을 금 융위원회로 이전하여야 하고, 금융위원회는 이전받은 이용자 소유 예치금과 가상자산 등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이와 관 런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제12조(이상거래에 대한 감시) ①
·② (생 략)
<<u>신 설></u>

<신 설>

수 있다.

-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가상 자산시장 운영 종료 절차와 이 전 및 반환 조치 등에 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 제12조(이상거래에 대한 감시) ①
 ② (현행과 같음)
 - ③ 제1항의 가상자산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인력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연수 제도 수립 등체계적인 인력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